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16일  
발 의 자 : 최영수·김광수(노원)·김기만  
서윤기·김구현·김진철·이승로  
이병해·맹진영·박호근·강구덕  
성중기·김영한·유 용·김창원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조명기기의 경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실내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의 경우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함(안 제15조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」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

- 1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호

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은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공공부문 에너지절약) ① ~ ②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5조(공공부문 에너지절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은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